

2004. 9. 20(월) 10:00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

3.

4. 가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9. 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9. 9

다. 의안번호 : 제2004 - 36호

라. 상정일자 : 2004. 9. 15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정보통신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관련사무와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발생한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 평생교육담당 신설에 따른 평생교육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또한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 설치 시까지 한시기구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담당신설에 따른 실·과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함(안 제4조 제2항)

1. 행정과장 사무 추가

-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수행
-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업무

2. 자치지원과장 사무 추가

-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및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평생교육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

- 개정조례 제3호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제 7188호, 04.3.11제정)으로 발생한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와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사용 전 검사업무가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 법률 제7140호(2004.1.29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 업무를 이관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행정과장 소관업무로 추가.
- 개정조례 제4호안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및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 평생교육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의 업무는 자치지원과장 소관 업무로 추가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개정
- 주민자치 및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체적으로 업무명을 명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부칙 제2항(한시기구)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시·군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 설치 시까지 그 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함.

-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9. 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9. 9.

다. 의안번호 : 제2004 - 37호

라. 상정일자 : 2004. 9. 15.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 설치 시까지 한시기구 시한을 연장하고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관련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 재해유형의 다양화 및 재해·재난의 광역화·대형화로 인해 읍·면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 방재인력을 보강하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군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17명 630명(증 1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 총 원 : 631명 644명(증 13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에 관한 안으로 정원 총수가 631명에서 644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사유는 읍·면·동 방재인력(기술직)보강지침(경상남도 행정과-4805(2004.5.19호)과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가 조정하는 사항임
- 부칙 제2조항은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에 관한 존속기한을 규정한 사항임
-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9. 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9. 9.

다. 의안번호 : 제2004 - 38호

라. 상정일자 : 2004. 9. 16.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착오 적용된 법률 조항을 정정하고,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조정하며,
- 위원회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의결방법을 변경하는 등 조례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제정 근거 조항을 정정함(안 제1조)
- 위원회의 임기가 당초 1년이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함(안 제3조 제1항)
- 위원회의 의결방법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안 제1조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현행 온천법시행령 제5조는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근거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로 법적 근거규정을 정정함이 타당함
- 조례안 제3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임기 1년은 짧은 기간으로 위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연장 조정함은 타당함
- 조례안 제6조제2항은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현행 제2항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였으므로 가부동수는 과반수에 못미치므로 당초부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현행 조문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조문은 필요없는 조문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9. 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9. 9.

다. 의안번호 : 제2004 - 39호

라. 상정일자 : 2004. 9. 16.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수수료가 인근 시·군에 비하여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을 기하고,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근접 지원을 통한 예우를 하는 등 조례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수수료가 인근 시·군보다 낮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함(안 제8조 별표3)
 - 당초 : 2,500원 변경 : 4,000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등에 대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3. 검토내용

- 조례 제8조제1항안은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수수료가 인근 시·군보다 낮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 2,500원 변경 : 4,000원으로 조정함은 타시군·단체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아 타당함
-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4호내지 제7호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등에 대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건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 이는 2002년 6월 4일 총리주재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를 확정, 노령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도 및 진주보훈지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생략) (별표3)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 <table><tr><td>검사·시험 항목</td><td>수수료</td><td>비고</td></tr><tr><td>9.자동차 운전면허(시력, 삼색식별, 시야150도 이상, 사지운동, 청력)</td><td>4,000원</td><td></td></tr></table>	검사·시험 항목	수수료	비고	9.자동차 운전면허(시력, 삼색식별, 시야150도 이상, 사지운동, 청력)	4,000원		제8조----- (생략) (별표3) ----- <table><tr><td>-----</td><td>---</td><td></td></tr><tr><td>9.-----</td><td>4,000원</td><td></td></tr><tr><td>-----</td><td></td><td></td></tr></table>	-----	---		9.-----	4,000원		-----		
검사·시험 항목	수수료	비고														
9.자동차 운전면허(시력, 삼색식별, 시야150도 이상, 사지운동, 청력)	4,000원															
-----	---															
9.-----	4,000원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생략) (생략)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생 략)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가 . 가 5. 2 6. 7.(4)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지침으로 감면토록 정한것만 있고, 상위법령에서 근거한 법령이 명확치 않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11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조”로 하여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안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4. 9. 7. 신주범의원외 7인

나. 회부일자 : 2004. 9. 9.

다. 의안번호 : 제2004 - 45호

라. 상정일자 : 2004. 9. 16.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정이유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토록하여 성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식품비의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함.(안 제 4조)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5조)
-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매학기 말일까지 정산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9조)
-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군수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거창군학교급식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거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토록하며 성장기학생의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우수 농·축산물 판매촉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두어 학교급식비 지원 방법, 지원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에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 지를 지도 감독하는 등 급식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지원체제는 타당하다고 보아짐

- 조례안 제1조(목적)은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학교급식의 정의를 학교급식법 제2조에서 학교급식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정의된 내용과 달리 하위법인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것과 상위법령에서 하위법인 조례로 우수 농축산물을 정의하여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조례안 제3조(예산지원) 제4조(지원방법), 제5조(지원신청)은 예산지원과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함
-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와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8조(회의 등)는 위원회 설치·회의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으

로 필요하다고 보며, 타당함

-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도 타당 하며,
- 제10조 제1항은 지원된 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확인, 제2항은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3항은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모두 본 조례에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 제11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공무원제외)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 되지 않음.

4.

$$[\quad] :$$

가

$$\left(\begin{array}{c} \text{ } \\ \text{ } \end{array} \right) : \quad \bullet \quad \bullet$$

가

가 .

가

- 5. :
- 6, :
- 7. : 가
- 8. :
- 9. :